

#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3. 5. 9

제출자 : 사천시장

## 1. 개정이유

문화예술회관내 전시실 준공을 앞두고 전시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회관의 사용시설중 전시실 사용을 추가함(안 제2조)
- 나. 전시실 사용시간을 09:00시부터 21:00시 까지로 함(안 제5조)
- 다. 전시실 1일(09:00부터 21:00) 사용료는 m<sup>2</sup>당 120원으로 하고 냉·난방시설 사용료는 실사용액에 10%를 추가함(안 별표1)

## 3. 법적근거 :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35조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- 나. 예산조치 : 월 565천원
  - 1) 인건비 : 95천원(공익근무요원1명, 공무원 인건비 제외)
  - 2) 수용비 : 440천원(전기료, 수도료, 유지관리비)
  - 3) 임차료 : 30천원(캡스)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입법예고기간 : 2003. 4. 4~2003. 4. 26 ( 23일간)

나) 예고방법 : 신문게시공고(경남일보외 2개사) 및 인터넷 게시공고

다) 의견 제출내용 및 반영 : 제출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1호 중 “소공연장”을 “소공연장, 전시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관”을 “공연장 및 부대설비”로 하고,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, 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,제2항”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1: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.

별표1 제1호의 소공연장란 다음에 전시실란 및 제2호 냉·난방란의 소공연장란 다음에 전시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전 시 실	1일/m <sup>2</sup> 당	120	
전 시 실	1회 전시	실사용액에서 10%가산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사용시설)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기본시설 : 대공연장, 소공연장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 2 조 ( 사 용 시 설 ) - - - - 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,</p>
<p>제5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,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<p><u>전시실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공연장 및 <u>부대설비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.</p>	<p>②<u>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1: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.</u>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제1항, <u>제2항의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[별표1]

##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

### 1. 시설사용료

현행	개정안				
대공연장 (생략) 소공연장 (생략)  <u>&lt; 신설 &gt;</u>	대공연장 (현행과 같음) 소공연장 (현행과 같음)  <table border="1"><tr><td>전시실</td><td>1일/m<sup>2</sup>당</td><td>120</td><td></td></tr></table>	전시실	1일/m <sup>2</sup> 당	120	
전시실	1일/m <sup>2</sup> 당	120			

### 2. 부대시설사용료

현행	개정안				
냉·난방 대공연장 (생략) 소공연장 (생략)  <u>&lt; 신설 &gt;</u>	냉·난방 대공연장(현행과 같음) 소공연장(현행과 같음)  <table border="1"><tr><td>전시실</td><td>1회 전시</td><td>실사용액에서 10%가산</td><td></td></tr></table>	전시실	1회 전시	실사용액에서 10%가산	
전시실	1회 전시	실사용액에서 10%가산			

## 타시군 전시실 사용료등 비교분석

구 분	1일 사용시간	1일사용료 (㎡당)	냉·난방		비고
			냉방	난방	
사 천 시	09:00~21:00	120원	실사용액에 10%가산		
경상남도 문예회관	10:00~21:00	121원	1일㎡당 : 36원	1일㎡당 : 24원	
창 원 시	09:00~23:00	364원	실사용액		
통 영 시	09:00~22:00	136원	시간당 : 10천원		
양 산 시	09:00~20:00 ※동절기19시까지	평일 : 202원 공휴일(토포함) : 252원	-	-	
거 창 군	10:00~21:00	121원	1일 : 10천원		
합 천 군	09:00~23:00	273원	-	-	
정 읍 시	09:00~22:00	대전시설:45천원 소전시실:28천원	-	-	
김 천 시	08:00~22:00	120원	-	-	
금 정 구	09:00~20:00	대전시설:40천원 소전시실:20천원	-	-	